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교육지원청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 등)”을 “(교육지원청의 명칭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교육감은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”를 “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여”를 “교육감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”로 한다.

-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명에 “교육지원청”을 붙여 사용한다. 다만,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구역명을 병기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지리적 위치·방향 또는 권역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정하여 “교육지원청”을 붙여 사용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)”를 “(교육장의 분장 사무의 범위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급학교”를 “각급 학교”로, “지도·감독사무”를 “지원 및 지도·감독사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”을 “각급 학교의

운영·관리에 관한”으로 한다.

별표 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지원청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정해진 교육지원청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교육지원청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 등) ①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.	제5조(교육지원청의 명칭 등)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명에 “교육지원청”을 붙여 사용한다. 다만, 관할구역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구역명을 병기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지리적 위치·방향 또는 권역 등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정하여 “교육지원청”을 붙여 사용한다.
② 교육감은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.	②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	<삭 제>

있다. ④ 교육부장관은 <u>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·도 교육청에 행정적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 제6조(<u>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</u>) <u>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~ 7. (생략) 8.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·집행, 수업료, 입학금 등 <u>각급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 사항</u>	④ ----- <u>교육감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제6조(<u>교육장의 분장 사무의 범위</u>) ----- ----- <u>각급 학교</u> ----- <u>지원 및 지도·감독사무</u>----- ---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 8. ----- ----- <u>각급 학교의 운영·관리에 관한</u> -- -----
---	---